

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4월 10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‘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’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, 근거 법률인 「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·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나.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
다. 특화작목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)

라. 특화작목발전협회 설립 및 운영(안 제8조)

마. 업무의 위탁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현행 조례는 근거법인 「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(2019년 1월 8일 제정, 이하 “법”)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 12월 13일 제정되었음
- 그동안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2022년 2월 22일 개정)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

나.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

- **안 제1조**는 이 조례의 목적을 자치조례 성격에 맞도록 정비함
 -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조례로서 위임조례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인용조문을 삭제함
- **안 제2조**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 것으로,
 - 법 제2조의 정의 규정과 동일하여 입법경제상 중복을 피하고, 이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거법의 정의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함
- **안 제4조 및 제5조**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발전 계획과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,

- 법 제5조에 따르면 발전계획은 필요한 경우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이에 맞게 수정함
- 또한, 발전계획과 실천계획 수립 순서의 체계를 바로잡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쉽게 풀어쓰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음
- 안 제7조는 특화작목육성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것으로,
 -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협의·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고, 그 기능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
- 안 제9조는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수정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안은 근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- (법적합성) 충청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률과 충돌되는 사항이 없고,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됨